3. 2011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□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

○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원칙 신설

-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

※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(국정감사 지적)

- 특별회계의 목적 외 운영 금지(여유자금의 과도한 전출입이나 수년에 걸친 전출입)

□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

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설정(한도내에서 예산편성)

※ **보조금 한도액**: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예산액 × (1+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) ⇒ 우리도 107.7% 수준

* **민간이전경비**= 민간경상보조, 민간행사보조, **사회복지보조**(신설) * 민간자본보조 제외

②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

- 동일사업 지원 3년간 경과시 일몰제 적용,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

③ 행사·축제보조금 관리 강화

- 행사·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 제정(10월중)

④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

- 학교별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지원계획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

※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(308-06목) ⇒ 우리도 자영농과생 급식비(133백만원)

□ 경상경비 운영 효율화

①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

- 업무추진비 부당한 집행시 집행금액 만큼 지방교부세 우선 감액하고 감액금액 5배이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액 총액에서 추가 삭감

②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편성기준 신설

- 과목변경 : 포상금 → **일반운영비**(사무관리비)로 변경

③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유사경비 통합

- 명칭정비 :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→ **특정업무경비**(국가와 명칭통일)
- 유사경비항목 통합 : 현행 17종(공통8, 선택9) → 개정 12종(공통5, 선택7)

※ 대민활동비(5만원)와 기준액이 동일하여 병급이 안되는 경비항목 삭제(관재,법무), 회계·계약·복식부기 통합(복식부기 감액 10→5만원)

④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자율성 확대

-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해 지급단가의 20%범위 내에서 조정지급 가능

※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이 승진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전보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승진전보다 감액되는 것을 방지

□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정비

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예산(안)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

②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 변경: 16개 → 11개 세목('11.1월부터 시행)

〈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〉

◦ **중복과세 통폐합** : 취득세 + 등록세 → **취득세**
재산세 + 도시계획세 → **재산세**

◦ **유사세목 통합** : 등록세 + 면허세 → **등록면허세**
공동시설세 + 지역개발세 → **지역자원시설세**
자동차세 + 주행세 → **자동차세**

◦ **폐 지** : 도축세

◦ **현행유지** : 주민세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, 담배소비세, 레저세, 지방교육세

③ 기타 과목구분 등 개선

-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문화재 발굴사업비 항목 추가
-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이용항목에 명시
- 총액인건비 범위 조정

※ 업무추진비, 직책급업무수행경비, 특정업무수행활동비, 연금지급금 제외

- 일반운영비 목에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자체 수수료부담 항목 추가